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6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주철현·안도걸·박균택

양문석 • 박정현 • 박용갑

이병진 · 위성곤 · 장종태

김문수 · 이원택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을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것에만 적용하며"로 기일 기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5년 12월 31일</u> 까	<u>2028년 12월 31일</u>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 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8조의3제1항 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u>20</u>
28년 12월 31일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 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

세 과세특례) ①
<u>2028년 12월 31일</u>
_ _

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 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 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 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 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 7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 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
<u>202</u>
8년 12월 31일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u> <u>12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 2.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1. <u>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u> 12월 31이
<u>12월 31일</u>
2. 2030년 1월 1일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2028년
<u> </u>
<u>2</u>
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
월 31일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u>2030</u>)년_	1월	1일				
									•
제	105	조(년	부가	가치	세	영세	율의	기	적
	용)	1							
		•							
		제53	호는	202	25년	12	월	31	일
	<u> </u>	'l Ó	нΥ		М		거┖	I -	저
	<u> </u>				(에				
	용ㅎ					<u> </u>			

- 1. ~ 6. (생략)
-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 2호는 <u>2025년 12월 31일</u>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 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 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 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 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 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 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 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 다.

1. ~ 13. (생략)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u> </u>
7)] 1 축 노 0000
<u>제1호는 2028</u>
년 12월 31일
<u>적용하며,</u>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
<u>8</u> \overline{\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체결
<u>된 것에만 적용하고</u>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u>것에만 적용하며</u>
<u> </u>
·
1 10 (원웨리 기수)
1. ~ 13.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 1. ~ 22.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②	
31일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디	H한 개별소비
세의 면제) ①	
<u>2028년 12월</u>	31일
1.・2. (현행과 같	<u> </u>
② (현행과 같음)	